



## 당일 등록 절차

### 당일등록이란?

2019년 네바다 주 의회 법안 345는 네바다주 내 선거 당일등록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중요한 부문은 유권자등록을 처음 하거나 등록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람은 선거일 당일에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유권자들에게 편리한 만큼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당일등록은 어떻게 하는가?

당일등록 절차를 활용코자하는 사람은 유효한 네바다 주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소지하고 투표소 현장에서 본인이 직접 투표에 참여해야 합니다. (인디언부족 신분증 사용도 가능하나 특정 사항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아래 설명하는 "당일 등록에 인디언부족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는가?"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기타 여권이나 군인신분증은 당일등록 시 본인확인 방안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투표소에서 직접 선거관리관에게 네바다 주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고 등록을 하거나 기존 내용을 수정하기 바랍니다. 만약 네바다 주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 상에 현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면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현주소를 확인시킬 수 있는 증빙서류로 다음의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군인 신분증;
- 전기, 가스, 난방유, 수도, 하수도, 정화조, 전화, 휴대전화 또는 케이블 텔레비전 서비스 청구서;
- 은행 또는 신용조합 계좌 통지서;
- 급료 수표;
- 소득세 보고서;
- 모기지 관련 통지서, 주택 임대계약서;
- 자동차 등록증;
- 부동산세 청구서;
- 기타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서류; 또는
- 인디언부족 신분증.

필요한 신분확인 서류를 제시한 후 등록절차를 마치면 투표용지가 제공됩니다. 이 투표용지는 상황에 따라 잠정투표용지일 수도 있습니다 (잠정투표용지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확인하기 바랍니다).

### 최근에 네바다 주로 이사한 사람으로 아직 네바다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이 없는데, 당일등록이 가능한지요?

할 수 없습니다. 당일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네바다 주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규정은 예외가 없이 적용됩니다.

### 아직 공식적인 네바다 주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우편으로 받지 못했는데, 임시 종이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으로 당일등록이 가능한지요?

네, 가능합니다. 차량국에서 받은 임시 종이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은 "임시 서류"라고 하는 것으로 이 서류는 합법적이고 확인 가능한 신분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 인디언부족 신분증을 사용하여 당일등록을 할 수 있는지요?



# NEVADA SECRETARY OF STATE

네, 가능합니다. 다만 네바다 수정법 (NRS) 237.200에 따르면 인디언부족 신분증이 개인의 신분확인용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분증 소지자의 법적 성명;
- 신분증 소지자의 생년월일;
- 신분증 소지자에게 부여된 고유번호;
- 신분증 소지자의 얼굴 전체 디지털 사진;
- 신분증 소지자의 거주지 주소;
- 신분증 소지자의 키, 몸무게, 머리 색깔, 눈 색깔 등 신체부위에 대한 묘사;
- 신분증 소지자의 공식 서명;
- 신분증 발행일자; 그리고
- 신분증 발급 인디언부족 정부 관련 문구

## 운전허가증(DAC)으로 당일등록이 가능한지요?

운전허가증은 운전면허증과 달라 당일등록 신청 시 거주지 주소증명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신분증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즉, 투표소에서 당일등록을 위해서는 선거관리관에게 반드시 유효한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온라인으로 당일등록이 가능한지요?

네바다 거주자로서 유효한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은 [Register To Vote. NV](#) 를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당일 등록코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간이 조기투표 시작일 (선거일 3주 전 토요일부터 시작됨) 전날부터 선거일 당일까지 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유권자등록을 하거나 등록내용 수정을 하고 다가올 선거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당일등록수칙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즉, 조기선거일 하루 전부터 선거당일 사이에 온라인으로 등록한 사람은 당해 선거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표소에 본인이 직접 나타나 유효한 네바다주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왜 내게 잠정투표용지가 지급되었는지요?

네바다 수정법(NRS) 293.5832에 의거 카운티 클럭은 유권자가 등록내용을 수정했을 경우 해당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여 잠정투표용지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유권자에게 잠정투표용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잠정투표용지란 무엇인가요?

잠정투표용지란 정식 투표용지와 마찬가지로 유권자 소속 선거구와 관련된 전체 후보자 명단, 시민제안, 의원제안, 질의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정투표용지라 부르는 이유는 유권자가 투표자격을 갖추었는지 또는 해당 선거에 이미 투표한 적이 없는지 등이 확인된 후에야 정식 투표용지로서 개표되어 통계에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잠정투표용지는 개인투표와 우편투표 등이 개표되고 카운티 클럭이 본인의 투표자격을 확인할 때까지 개표되지 않습니다.

## 나의 잠정투표용지가 개표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유권자는 언제라도 카운티 클럭을 통해 직접 본인의 투표경과를 확인할 수 있지만 투표용지에 대한 상황은 [Voter Search](#) 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잠정투표용지로 투표하였다면 투표경과에 "잠정투표" (Provisional Vote)로 나타납니다. 본인의 투표자격이 확인되고 투표용지가 개표된 후에도 "잠정투표"로 표시됩니다. 만약 투표자격이 확인되지 못하고 따라서 개표 되지 않았다면 선거일로부터 10-15일 후에는 "잠정투표" 표기가 삭제되면서 해당 선거에 투표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 NEVADA SECRETARY OF STATE

### 나의 최종 투표기록이 나타나는데 왜 선거 후 10-15일이나 걸리는지요?

선거결과는 선거 후 카운티의 검토를 거쳐 주정부의 증명이 나기까지는 비공식적이 됩니다. 네바다 수정법 293.317과 주법에 따르면 정당한 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편투표용지는 선거일 후 4일째 되는 날 오후 5시까지 카운티 클럭이 접수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투표한 용지와 우편 투표용지가 모두 개표된 후 잠정투표용지가 개표됩니다. 카운티 클럭은 네바다 수정법 293.387에 의하여 잠정투표용지까지 모두 개표된 이후 개표결과를 카운티 커미셔너들에게 증명하게 되며, 이를 선거일 후 10일 내에 주정부 주무장관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자세한 투표결과 내용은 48시간 내 [Voter Search](#) 에 게재됩니다.

### 이번 선거에 투표하고 나서 당일등록을 하면 새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네바다 수정법 293.780에 의하면 누구나 당해 선거에는 단 한 번만 투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투표용지를 카운티 클럭에게 제출했다면 미국 내 어느 카운티에 가더라도 다른 투표용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한 카운티에서 투표를 마친 사람이 선거일 전에 다른 카운티로 이사했다라도 적용됩니다. 이사하기 전 카운티에서 이미 투표를 했다면 새로 이사 간 카운티에서 당일등록하고 새 투표용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당일등록 절차가 투표부정을 일으킬 수 있나요?

아니요. 당일등록 절차에는 투표부정을 방지하고 이를 찾아내는 여러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당일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유권자 본인이 유효한 네바다 주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또한 이를 투표소에 있는 선거관리관에게 반드시 직접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타주 거주민이 당일등록 절차를 이용하여 부정을 저지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일 등록된 유권자의 잠정투표용지를 개표하기 전에 주 전체적으로 유권자 한 명 당 한 투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잠정투표자들의 이름과 운전면허증번호와 신분증번호를 조회하는 절차를 통해 한번 이상 투표했는지 조사하게 됩니다. 이 조사는 이미 개표가 된 개인투표자와 우편투표자들의 명단과 비교하여 잠정투표자가 이중으로 투표했는지도 알아보게 됩니다. 투표부정을 저지른 유권자는 D항목 중범죄에 해당되며 법정 최고형을 받게 됩니다. 동일 선거에서 한번 이상 투표하려는 시도 자체도 투표부정에 해당됩니다.